

■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현황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 - 면세법인 사업자’

-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
-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됨
 -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현재 ‘면세법인 사업자’로 등록되어 있는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임
- 면세법인 사업자(법인으로 보는 단체)의 장·단점

장점	단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설립의 용이성 :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,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등록 · 회계의 투명성 및 회계관리의 용이(법인카드 사용가능) · 사회단체, 국가, 지자체 용역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법인에 비해서는 가능성 낮음 · 주무관청의 관리·감독을 받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법인세 납세 가능(고유목적 사업은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) · 별도의 정관 변경 등 내부 행정적 절차 필요 ·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어려움

-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법인화의 필요성
 -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상승
 -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능
 - 기록관리발전을 위한 목적사업 가능
- 전문가단체의 법인화 현황

단체명	설립근거
한국사서협회	· 도서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
대한간호사협회	·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
대한의사협회	·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
대한의무기록협회	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

■ 비영리 사단법인

- 비영리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이 허가한 법인
 - 협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시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
- “비영리”란 구성원이 이익배분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, “사단법인”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
- 비영리 사단법인의 장·단점

장점	단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대적으로 협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상승 및 공공성 요구 확대 · 회계의 투명성 및 회계관리의 용이(법인카드 사용가능) · 국가연구용역 참여 가능 및 사회단체, 국가, 지자체와의 공동 용역사업이 용이 · 면세사업자(단, 수익사업 발생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격리 필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(정관변경, 대표자 및 임원 변경, 주소변경 등) · 대표자 주소이전 등 주요변경사항 발생시 별도 변경등기 신청 및 등기 임원의 책임성 높아져야 함 · 세무회계 처리(별도 기장 등) · 출연금(기본재산) 등 초기자본 필요(주무관청에 따라 다름) · 별도의 총회 개최, 정관 변경 등 내부 행정적 절차 필요 · 주무관청의 관리·감독(사업 및 회계, 회원 현황 등)

□ 설립절차

- 2인 이상의 설립자 및 발기인(기명 날인) 구성
- 창립총회 개최(임원선임-이사, 감사 등) 및 회의록 및 정관 작성(임원 기명 날인)
- 주무관청(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) 설립허가신청서 제출
 - 정관,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,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,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, 창립(발기인) 총회 회의록
- 주무관청 설립허가증 발급
- 설립등기(법원 등기소 방문) 및 등록면허세 납부

■ 참고(협동조합)

- 정의 :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, 생산, 판매,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
- 구분

구분	일반협동조합	사회적 협동조합
법인격	· (영리)법인	· 비영리법인
설립	· 시도지사 신고(5인 이상)	· 기획재정부(관계부처) 인가(5인 이상)
사업	·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, 금융 및 보험업 제외	·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 - 지역사회 재생, 주민 권익 증진 등 - 취약계층 사회서비스, 일자리 제공 - 국가·지자체 위탁사업 -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
법정적립금	· 잉여금의 10/100 이상	· 잉여금의 30/100 이상
배당	· 배당 가능	· 배당 금지
청산	·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	· 비영리법인·국고 등 귀속